



상담 통합 운영위원회 규정

제 정 일	2018. 5. 1
개 정 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생생활상담센터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주기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, 진로결정 및 취업 상담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된 상담 통합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이 된다.
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위원, DU일자리센터 운영위원, 행정지원과장, 학사운영과장, 교수학습지원센터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보직기간으로 한다.
- 제 3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.
 1. 대학생활 주기별 순차적 상담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2.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프로그램 간 운영결과 평가 및 비교분석, 환류에 관한 사항
 3. DU일자리센터 상담 프로그램 간 운영결과 평가 및 비교분석, 환류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 4조 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 ② 정기회의는 연 2회(2월, 6월)로 한다.
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 5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 6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